



퇴직연금 운용 및 활용의 중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노후소득원 마련책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중위소득 수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할 경우 투자 수익률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46만 원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여 국민연금과 합산할 경우 은퇴 이후 필요소득에 근접한 노후소득을 발생 시킬 수 있음.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방지,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가입자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

-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가입 및 납입요율이 정해지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지지만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이 납입한 기여금과 운용수익의 합과 동일한 사적연금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도 확대에 힘쓰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이 결정되어 있는 DB형과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이 근로자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¹⁾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직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함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속기간 동안 기여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퇴직 시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함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54조 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67.2조 원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은 34.4조 원 수준임²⁾
-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활용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함

○ 중위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한 경우 퇴직 시 약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퇴직연금 적립

1) 본인이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2) 금융감독원(2021),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월 234만 원임³⁾
 -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소득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매년 234만 원의 퇴직연금 자산이 적립됨
- 중위소득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는 연평균 실질수익률에 따라 7,020만 원(0%)에서 1억 1,133만 원(3%)까지 다르게 나타남
 - DB형 가입자의 경우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만큼을 연 수익률로 생각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노후소득의 현재가치는 114만 원에서 131만 원 수준임

〈표 1〉 DC형 퇴직연금 연평균 실질수익률에 따른 노후소득 현재가치

(단위: 만 원)

퇴직연금 실질수익률 ¹⁾	퇴직연금		국민연금 ⁴⁾	노후소득 ⁵⁾
	적립금 ²⁾	월 수령연금액 ³⁾		
0%	7,020	29.3	84.5	113.7
1%	8,140	33.9	84.5	118.4
2%	9,493	39.6	84.5	124.0
3%	11,133	46.4	84.5	130.8

주: 1) 실질수익률 = 운용수익률 - 물가상승률

2)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 시 실질수익률별 퇴직연금 적립금

3)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을 20년간 연금으로 수령,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일하고, 금융회사 사업비는 없다고 가정

4) 중위소득을 수준의 1975년생 근로자가 2005년부터 30년간 근로할 경우 65세가 되는 2040년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산출

5)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산액

○ 분석결과 중위소득 근로소득자가 근로기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입할 경우 은퇴 이후 약 120만 원 수준의 월 소득을 확보하여 필요한 노후소득의 일정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연구원은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소득을 단독가구 월 130만 원, 부부가구 월 210만 원을 산출하였음⁵⁾
 - 노인가구의 필요 지출항목을 식료품, 의료, 보건, 교통, 통신, 주택 등 11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필요 소비수준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로 산출함
- 중위소득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단독가구의 필요소득에 근접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통계청(2019),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4)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함. 평균소득은 309만 원으로 나타남

5) 성혜영·이은영(2020),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2% 중반으로 가정하면⁶⁾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1% 안팎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은퇴 이후 소득의 현재 가치는 약 월 120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맞벌이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없이 꾸준히 적립해야 함

- 2020년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가입자 중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중은 3.3%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는 28.4%에 달함⁷⁾
 -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643만 원인 데 비해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8,998만 원임
 -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이유가 중도인출 등으로 충분한 적립금을 마련하지 못해 퇴직 시 적립금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의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산으로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임차, 근로자 파산 및 회생, 근로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 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입자 수는 7만 3천여 명, 금액기준으로는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2018년 7.2만 명, 2조 6천억 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⁸⁾
 - 중도인출의 주된 이유로는 장기요양(37.7%), 주택구입(30.2%), 주거임차(22.3%) 등으로 나타남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적립금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은퇴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이가 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상품을 교체해 본적이 없다는 가입자의 비중이 68.4%에 달하며, 58.1%의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⁹⁾
 -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면 운용지시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 활용 시 은퇴 이후 필요한 소득의 일정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원으로서 중요성 및 중도인출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 설명, 퇴직연금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 중반으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이 가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함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4. 5),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100조 원 돌파 퇴직연금 총 적립금 255.5조 원 달성”

8) 통계청(2021), “퇴직연금 통계”

9) 한국경제·미래에셋(2021), “퇴직연금 설문”

필요성 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발생 시 특별대출 등을 지원하여 중도인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단, 동 분석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5세 이후 연금소득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현재 정년인 60세부터 65세 사이 기간의 소득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